

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남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75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25.

발 의 자 : 김남희 · 이수진 · 박상혁
김교홍 · 남인순 · 전진숙
서미화 · 복기왕 · 장종태
양부남 · 최혁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4년 이주배경인구(통계청)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인구는 2024년 11월 1일 기준 271만 5천 명으로 총 인구 대비 5.2%이고,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은 73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5만 4천 명(7.9%)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주배경가족의 한국 생활 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이 중요한 시점임.

그러나 2008년 제정된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은 지원 대상을 결혼 이민자 가족이나 귀화자 가족 그리고 그 자녀를 정책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어, 다문화가족 자녀가 아닌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의 경우 관련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.

특히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은 미래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어 다문화가족에 속하지 않는 외국인 등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

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언어, 교육, 심리·진로 상담 등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(안 제14조의3 신설).

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3(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에 대한 특례) ① 제10조의 규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아니면서 제14조 및 제14조의2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하여 준용한다.

② 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4조의3(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에 대한 특례) ① 제10조의 규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아니면서 제14조 및 제14조의2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하여 준용한다.</u> <u>② 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</u>